

프랑스 ABS 명령(한국어): 생물다양성법 명령 제 2017-848호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적 지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적 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관한 법령 제 2017-848호

2017. 5. 10

프랑스 관보

5/396

법령, 명령, 공문

본문

기후에 관한 국제 관계를 담당하는 환경·에너지·해양부(部)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적 지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적 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관한 법령 제 2017-848호,
2017. 5. 9

NOR : DEVL1702693D

관련인 : 프랑스 영토 내에서 생물유전자원 혹은 그와 관련된 전통적 지식 내용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생물유전자원이나 그 관련 지식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상관없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생물유전자원 혹은 그와 관련된 전통적 지식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

대상 :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유전자원 및 그와 관련된 전통적 지식에 대한 접근. 이는 유전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내 사용자들이 나고야 의정서(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 내용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이루어진다.

시행 : 본 법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환경에 관한 법률 제 D. 412-39, D. 412-41호는 예외이다.

개요 : 본 법령은 생물유전자원 혹은 그와 관련된 전통적 지식 사용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절차와 관련된 행정적 관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다.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은 계약을 통해 정한다.

본 법령은 프랑스 해외영토 및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하에 자원의 특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다.

본 법령은 또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2014년 4월 16일 채택한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 사용자의 나고야 의정서(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 내용 준수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511/2014호에 따라 유전자원 수집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규정에 합당한 접근을 위한 사용자의 “의지”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참조 : 레지프랑스(Légifrance) 사이트(<http://www.legifrance.gouv.fr>)를 통해 개정판 환경법을 참조할 수 있다.

총리는 참사원(공공건설 부문)의 동의 하에 기후에 관한 국제 관계를 담당하는 환경·에너지·해양부(部) 장관의 보고서에 기초함과 동시에 아래에 열거하는 모든 자료에 근거하여 본 법령을 공포한다.

1992년 5월 22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되고 1992년 6월 13일 프랑스에서 조인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부록 두 권 포함)

- 생물다양성 협약에 기초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1년 9월 20일 프랑스에서 조인됨)

-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2014년 4월 16일 채택한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 사용자의 나고야 의정서(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 내용 준수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511/2014호

- 환경법 제 L. 412-3조~제 L. 412-20조 및 제 L. 635-2-1조, 제 L. 640-5조

- 지방정부에 관한 일반 법률 중 특히 제 L. 7124-19조

- 행정재판에 관한 법률 중 특히 제 L. 213-1조~제 L. 213-6조 및 제 R. 213-1조~제 R. 213-4조

- 국민과 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법률

- 윌리스 푸투나 제도(Wallis&Futuna Islands)에 대한 해외영토 지위 부여에 관한 법 제 61-814호(1961년 7월 29일 제정)

- 행정 결정 지방분산에 관한 1997년 1월 15일 법령 제 97-34호

- 행정 결정 지방분산에 관한 1997년 1월 15일 법령 제 97-34호 제 2조의 첫 번째 문단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게 적용하기 위한 1997년 12월 19일 법령 제 97-1204호

- 2017년 2월 10일 프랑스령 레위니옹(La Réunion) 도 의회의 요청

- 2017년 2월 10일 프랑스령 레위니옹 지방 의회의 요청

- 2017년 2월 10일 프랑스령 기아나(Guyane) 의회의 요청

- 2017년 2월 10일 프랑스령 마르티니크(Martinique) 의회의 요청
- 2017년 2월 13일 프랑스령 마요트(Mayotte) 도 의회의 요청
- 2017년 2월 14일 프랑스령 과들루프(Guadeloupe) 도 의회의 요청
- 2017년 2월 14일 프랑스령 과들루프 지방 의회의 요청
- 2017년 3월 1일 윌리스 푸투나 제도 지방 의회의 요청

제1조 - I. - 환경법 제 4권 제 1절 제 2장의 제목은 “자연자원 사용에 관한 지침” 으로 바꾸도록 한다.

II. - 위와 동일한 장에 제 4부를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제4부

생물유전자원과그와관련된전통적지식에대한접근그리고유전자원사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에대한공유

세부항목1

자국영토에서의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위한신고절차및유전자원사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공유

제 R. 412-12조 - 제 L. 412-7조 제 IV항에서 언급한 이익공유에 관한 일반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한 생물다양성 이해를 목적으로 생물유전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 신고서류에 명시한 종(種)이나 근접한 종들의 천연 서식지 내에서의 보존 혹은 천연 서식지 외에서의 보존 활동

- 신고서류에 명시한 종이나 근접한 종들에 관한 연구, 교육, 연수, 현지 주민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기술 이전과 같은 작업을 위한 모든 협력 혹은 기여활동

2. 생물유전자원이 수집 및 보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신고서류에 명시한 종이나 근접한 종들의 천연 서식지 내에서의 보존 혹은 천연 서식지 외에서의 보존, 예를 들어 표본의 복제본 수집 및 보관

3. 생물유전자원이 상업적 개발이라는 목적을 배제한 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신고서류에 명시한 종이나 근접한 종들의 천연 서식지 내에서의 보존 혹은 천연 서식지 외에서의 보존 활동

- 유전자원 보존에 기여한 국가와의 연계 하에 신고서류에 명시한 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련되거나 생물다양성 활용을 가능케 하는 현지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제 R. 412-13조 - I. - 제 L. 412-7조 I과 III항에서 정하는 경우로 인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I. 본 신고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연인인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업체명, 법적 지위, 본사 주소지, 서명인의 직위를 기입해야 한다.
2. 신고 대상 활동 및 활동 목적을 기술한다.
3. 해당 유전자원의 분류군을 명시한다. 이때 표본을 채취한 장소와 수장된 자료의 경우에는 표본을 보유한 단체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4. 유전자원에 접근한 기술적 방식과 수집 조건을 명시한다.
5. 관련 활동 이행에 대한 예상 일정을 명시한다.
6. 해당 활동에 적용가능한 이익공유의 여러 방식들 중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과 그에 따른 수혜자를 명시한다.
7. 신고인 측에서 공개되면 산업 및 상업적 기밀 누설로 인해 제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밀 정보를 기술한다.

III. - 대중과 행정부문간 관계에 관한 법률 제 L. 112-9조에 따라 신고내용은 환경부 장관령이 정하는 텔레서비스(teleservice)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제 R. 412-14조 - I. - 신고서류가 미비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신고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서류가 완성되면 장관은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고서에 명시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신고인이 확인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가능하다.

II. - 신고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인은 최초 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을 따르는 수정본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 R. 412-15조 - I. - 기밀 정보를 은폐하거나 삭제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신고 확인서를 아래 기관에 전달한다.

1. 생물다양성 협약에 근거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채택) 제14

조가 정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정보센터”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 L. 412-4조가 정하는 유형의 지역공동체가 포함되는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제 L. 412-10조가 명시하는 공법인

II. -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서는 요약본이 환경부 관보에 6개월에 한 번씩 게재된다.

제 R. 412-16조 - I. - 과학적 수집물 보유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본 세부항목을 적용시키기 위해 제 L. 412-6조 내용이 정하는 혜택에 대한 수혜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적 수집물 보유자는 전년도 신고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거나 현재 년도 기준으로 시행된 유전자원 접근으로 인해 새로운 신고 내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가 제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중과 행정부문간 관계에 관한 법률 제 L. 112-9조에 따라 신고내용은 환경부 장관령이 정하는 텔레서비스(teleservice)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II. - 신고서류가 미비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신고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서류가 완성되면 장관은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III. - 장관은 I 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와 관련 확인서를 연구부 장관에게 참조용으로 전달한다.

기밀 정보를 은폐하거나 삭제한 경우 장관은 신고 확인서를 생물다양성 협약에 근거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채택) 제14조가 정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정보센터”에 전달한다.

IV. -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서는 요약본이 환경부 관보에 6개월에 한 번씩 게재된다.

제 R. 412-17조 - 과들루프, 레위니옹, 기아나, 마르티니크에서 제 L. 412-15조가 정하는 내용을 채택한 경우, 과들루프, 레위니옹 지방의회와 기아나, 마르티니크 의회, 그리고 마요트 도의회는 본 세부항목이 명시하는 내용 적용에 있어서 환경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항목2

자국내생물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유전자원사용에따르는이익공유에관한승인절차

제 R. 412-18조 - I. - 제 L. 412-7조 제 I항과 제 II항에서 명시한 사용 목

적 이외의 목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제 L. 412-7조 제 IV항 적용에 의거하여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고서류 내용이 제 R. 412-12조가 정하는 활동에 적용되는 이익공유의 일반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II. - 승인 요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연인인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업체명, 법적 지위, 본사 주소지, 서명인의 직위를 기입해야 한다.
2. 승인을 요청한 대상이 되는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활동 목표와 예상 활동 방식도 함께 명시한다.
3. 해당 유전자원의 분류군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술한다. 이때 표본을 채취한 장소도 함께 적는다. 특히 제 L. 331-1조가 정하는 국립공원이라는 지리적 제한구역에 위치하는지 혹은 수장된 자원의 경우라면 표본을 보유한 단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4. 유전자원에 접근한 기술적 방식과 수집 조건을 명시한다.
5. 해당 활동이나 계획된 적용방식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명시한다. 특히 접근을 요청한 유전자원의 지속적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이나 유전자원의 고갈 위험성과 같은 항목을 포함시킨다.
6. 관련 활동에 대한 예상 이행 일정을 명시한다.
7. 이익공유에 관한 제안서를 통해 기술적 재정적 역량을 소개한다. 이때 원한다면 기간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익공유 승인을 위한 내용인 제 R. 412-19조가 정하는 최대 예상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한다.
8. 승인 요청인 측에서 공개되면 산업 및 상업적 기밀 누설로 인해 제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밀 정보를 기술한다.

III. - 대중과 행정부문간 관계에 관한 법률 제 L. 112-9조에 따라 승인 요청서는 환경부 장관령이 정하는 텔레서비스(teleservice)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제 R. 412-19조 - 승인 요청서가 접수되면 환경부 장관은 접수 날짜가 명시된 접수증을 승인 요청인에게 전달한다. 환경부 장관은 평일 기준으로 15일 동안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다.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중과 행정부문간 관계에 관한 법률 제 L. 114-5조와 제 L. 114-6조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수정된 자료가 접수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환경부 장관은 이익공유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요될 기간을 신청인 측에 공지한다. 승인이 이루어

질 때까지 소요될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신청인이 신청서에 이 보다 더 긴 기간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는 예외이다. 장관은 제 L. 412-8조 제 IV항, 2 및 3호가 정하는 이유에 의해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 R. 412-20조 - I. -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은 환경부 장관령으로 작성된 표준 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다.

II. - 제 L. 412-8조 제 V항 마지막 문단에서 명시한 최소 금액은 천 유로 (euro)이다.

제 R. 412-21조 - 제 L. 412-8조 제 VII항이 정하는 조정 절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본 조정은 행정정의에 관한 법률 제 L. 213-1조~제 L. 213-6조 및 제 L. 213-1조~제 L. 213-4조가 정하는 중재에 적용 가능한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관할 재판소는 접근 요청 대상인 생물유전자원이 위치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행정재판소가 된다. 해당 생물유전자원이 하나의 행정재판소가 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리 행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 R. 412-22조 - I. - 제 R. 412-19조 두 번째 문단 내용 적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익공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혹은 행정정의에 관한 법률 제 R. 213-6조 두 번째 문단 내용 적용에 의거한 조정 절차에 의한 중재가 정해진 날짜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해당 유전자원 접근 신청은 반려된다.

II. - 이익공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환경부 장관은 해당 합의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근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 장관의 결정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승인서가 발부되는 것으로 본다.

승인서가 발부될 때 환경부 장관은 신청서에 명시된 활동 목적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한다. 장관은 또한 생물유전자원 사용 조건에 관한 규정을 승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 R. 412-23조 - 접근 신청 대상이 되는 활동이나 그 적용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일부 생물다양성 부문에 대한 이용을 목표로 한다면 자원 고갈의 위험성이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제 R. 412-24조 - I. - 기밀 정보를 은폐하거나 삭제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승인명령과 이익공유 계약서를 아래 기관에 전달한다.

1. 생물다양성 협약에 근거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채택) 제14조가 정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정보센터”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 L. 412-4조가 정하는 유형의 지역공동체가 포함되는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제 L. 412-10조가 명시하는 공법인

II. - 발부된 승인서의 요약본은 환경부 관보에 6개월에 한 번씩 게재된다.

제 R. 412-25조 - 승인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혹은 환경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장관은 승인서 발부 이후에도 유전자원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보장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지속가능한 사용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규정을 승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첨부할 수도 있다.

승인 수혜자의 요청에 이익공유 계약 내용 수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승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수락의 의미로 간주한다.

이익공유 관련 계약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 최초 계약 체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한다.

제 R. 412-26조 - 승인서 발부의 근거가 되는 사항들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뒤따르게 될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승인 수혜자가 관련 수정안을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때 해당 수정내용이 미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승인 수혜자의 요청에 이익공유 계약 내용 수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승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수락의 의미로 간주한다. 이 기간 동안 장관은 필요하다면 승인서에 추가 규정을 첨부할 수 있다. 이익공유 관련 계약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 최초 계약 체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한다.

제 R. 412-27조 - 과들루프, 레위니옹, 기아나, 마르티니크에서 제 L. 412-15조가 정하는 내용을 채택한 경우, 과들루프, 레위니옹 지방의회와 기아나, 마르티니크 의회, 그리고 마요트 도의회는 본 세부항목이 명시하는 내용 적용에

있어서 환경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항목3

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지식 사용을 위한 승인 절차

제 R. 412-28조 - I. - 제 L. 412-4조가 정하는 의미에서의 기아나 혹은 윌리스 푸투나 제도의 하나 또는 여러 지역공동체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전달해야 한다.

II. - 본 요청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연인인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업체명, 법적 지위, 본사 주소지, 서명인의 직위를 기입해야 한다.
2. 요청 대상 활동 및 활동 목적 그리고 예정된 적용내용을 기술한다.
3. 해당 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명시한다. 해당 지식이 수장물 형태라면 이를 보유한 단체를 명시해야 하고, 해당 지식 사용을 위해 유전자원에 접근해야 한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유전자원 표본의 원산지를 기입해야 한다.
4. 관련된 지식에 대한 접근 매뉴얼을 명시한다.
5. 요청인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직위를 기입한다.
6. 관련 활동에 대한 예상 일정을 명시한다.
7. 해당 활동이나 계획된 적용방식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명시한다. 특히 접근을 요청한 전통적 지식과 관련된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이나 유전자원의 고갈 위험성과 같은 항목을 포함시킨다.
8. 이익공유에 관한 제안서를 통해 기술적 재정적 역량을 소개한다.
9. 승인 요청인 측에서 공개되면 산업 및 상업적 기밀 누설로 인해 제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밀 정보를 기술한다.

III. - 대중과 행정부문간 관계에 관한 법률 제 L. 112-9조에 따라 승인 요청서는 환경부 장관령이 정하는 텔레서비스(teleservice)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제 R. 412-29조 - 승인 요청서가 접수되면 환경부 장관은 접수 날짜가 명시된 접수증을 승인 요청인에게 전달한다. 환경부 장관은 평일 기준으로 15일 동안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다.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중과 행정부문간 관계에 관한 법률 제 L. 114-5조와 제 L. 114-6조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수정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환경부 장관은 해당 서류를 제 L. 412-10조가 정하는 공법인에게 전달한다.

제 D. 412-30조 - 제 L. 412-10조가 정하는 공법인은 다음과 같다.

1. 기아나의 경우, 지방정부에 관한 일반법률 제 L. 7124-19조가 정하는 공공기관
2. 윌리스 푸투나 제도의 경우, 제 L. 635-2-1조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공동체로 구성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구(地區). 단, 해당 지구(地區)에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역공동체 협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를 명백하게 나타내지 않는 경우, 해당 협의체는 윌리스 푸투나 제도의 상급 행정관이 구성하도록 한다.

제 R. 412-31조 - 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 D. 412-30조가 정하는 법인은 해당 지역공동체의 협의체의 일정표를 확정하고 이를 승인 요청인에게 공지해야 한다.

협의 기간은 요청일로부터 최대 9개월이며, 해당 법인은 제 L. 412-11조 6항이 명시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역공동체의 충분한 참여와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전통적 지식 사용 요청이 상업적 개발이라는 직접적 목표가 아닌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에 대한 접근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협의 기간은 적어도 2개월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 협의 기간은 적어도 4개월로 규정한다.

제 R. 412-32조 - 요청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공동체가 협의기간 중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다. 요청 서류는 해당 지역공동체의 생활방식이나 문화를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특히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혹은 방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승인 요청인은 제 D. 412-30조가 정하는 법인의 동의 하에, 그리고 본 법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 R. 412-33조 - 지역공동체의 사전 동의하에 제 D. 412-30조가 정하는 법인은 제 L. 412-11조 6항이 정하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익공유 계약에 대해 승인 요청인과 협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본 조 부록에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따른다.

승인 요청인은 체결이 완료된 계약서와 관련 보고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

한다.

환경부 장관은 앞에서 명시한 자료들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청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장관의 결정이 공지되지 않은 경우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승인 명령에는 요청된 활동내용에 따라 각각의 유효기간이 명시된다.

제 R. 412-34조 - 승인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혹은 환경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장관은 승인서 발부 이후에도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지식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정확하고 공정한 공유를 보장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지속가능한 사용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규정을 승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첨부할 수도 있다.

환경부 장관은 승인 수혜자의 요청서를 제 D. 412-30조가 정하는 법인에 전달한다. 혹은 승인 명령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를 법인에 알린다.

승인 수혜자의 요청에 이익공유 계약 내용 수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승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수락의 의미로 간주한다.

이익공유 관련 계약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 R. 412-31조~제 R. 412-33조가 정하는 내용을 적용한다.

제 R. 412-35조 - 승인서 발부의 근거가 되는 사항들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뒤따르게 될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승인 수혜자가 관련 수정안을 환경부 장관과 제 D. 412-30조가 정하는 법인에 전달해야 한다. 이때 해당 수정내용이 미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승인 수혜자의 요청에 이익공유 계약 내용 수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승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수락의 의미로 간주한다. 이 기간 동안 장관은 필요하다면 승인서에 추가 규정을 첨부할 수 있다.

이익공유 관련 계약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 R. 412-31조~제 R. 412-33조가 정하는 내용을 적용한다.

제 R. 412-36조 - 이익공유 계약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혹은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 D. 412-30조가 정하는 법인은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보고를 받은 장관은 그로 인해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발생

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제 R. 412-37조 - 기밀 정보를 은폐하거나 삭제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승인 명령과 이익공유 계약서를 생물다양성 협약에 근거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채택) 제14조가 정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정보센터”에 전달한다.

발부된 승인서의 요약본은 환경부 관보에 6개월에 한 번씩 게재된다.

제 R. 412-38조 - 기아나 의회가 제 L. 412-15조가 정하는 심의내용을 채택한 경우, 기아나 의회는 본 세부항목이 명시하는 내용 적용에 있어서 환경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항목4

생물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사용에관한적합성규정

제 D. 412-39조 - I. - 연구부 장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관할한다.

1.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2014년 4월 16일 채택한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 사용자의 나고야 의정서(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 따르는 이익에 대한 공정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 내용 준수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511/2014호 제 7조 첫 번째 문단에 의거하여 유전자원 사용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사용을 포함하는 연구작업을 위한 사용자의 자금조달 신고절차를 접수한다. 이는 유럽연합법률 제 4조에 의거하여 해당 과업에 대한 사용자의 의지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2. 동일 법률의 제 7조 3~5문단 제 1호 및 제 9, 10, 12, 13조와 관련된 자원 사용 적용을 확인한다.

II. - 환경부 장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관할한다.

1. 위 제 I항 제 1호에서 언급한 법률 제 7조 두 번째 문단에 의거하여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사용을 통해 제작된 제품의 최종 개발 단계에서 신고절차를 접수한다. 이는 유럽연합법률 제 4조에 의거하여 해당 과업에 대한 사용자의 의지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2. 동일 법률의 제 7조 3~5문단 제 1호 및 제 9, 10, 12, 13조와 관련된 자원 사용 적용을 확인한다.

세부항목5

유럽연합내에서의 컬렉션등록부

제 R. 412-40조 - 생물유전자원 수집물 보유자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2014년 4월 16일 채택한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 사용자의 나고야 의정서(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 따르는 이익에 대한 공정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 내용 준수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511/2014호 제 5조가 정하는 대로 유럽 수집물 등록부에 자신의 수집물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서류 작성 방식이나 등록 서류 검토 방식, 등록된 수집물에 대한 검토 방식은 환경부 및 연구부 장관의 공동 법령으로 정한다.

제 D. 412-41조 - 연구부 장관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2014년 4월 16일 채택한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 사용자의 나고야 의정서(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 따르는 이익에 대한 공정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 내용 준수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511/2014호 제 5조의 적용을 관할한다.

제2조 - I. - 환경에 관한 법률 제 R. 635-1-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제 IV권 제 I부 제 II장 제 4부의 세부항목 3~5는 윌리스 푸투나 제도에 적용 가능하다.

II. - 동일 법률 제 R. 644-1조 제 I항에서 “제 R. 412-1~제 R. 413-51조”는 “제 R. 412-1조~제 D. 412-21 및 제 R. 413-1~제 R. 413-51조”로 바꾼다.

제3조 - 앞에서 언급한 1997년 12월 19일 법령 내 부록 제 I부 제 II항에서 제시한 도표 내 “제 IV권”에서 아래 내용 앞에

	프랑스 국립식물보존원 인가서 발부 및 반려	제 R. 416-5조
--	-------------------------	-------------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한다.

	유전자원 사용을 위한 접근 신고 접수증 발부	제 R. 412-14조,
	유전자원 사용을 위한 접근 승인 명령	제 R. 412-22조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사용을 위한 승인 명령	제 R. 412-33조

제4조 - I. - 본 법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환경에 관한 법률 제 D. 412-39조 및 제 D. 412-41조는 예외이다.

위 내용은 윌리스 푸투나 제도와 프랑스령 남부 및 남극지역에도 적용된다.

II. - 환경에 관한 법률 제 D. 412-30조에 대한 예외로 기아나의 경우, 지방 정부에 관한 일반법률 제 L. 7124-19조가 명시한 공공기관 창설에 관한 내용

에 따라 국가는 환경에 관한 법률 제 L. 412-10조가 정하는 공범인에 속한다.

제5조 - 기후에 관한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환경·에너지·해양부 장관과 교육·고등교육·연구부 장관, 해외영토부 장관, 생물다양성 담당 차관은 각자 해당 분야에서 본 법령의 이행을 책임진다. 본 법령은 프랑스 관보에 게재된다.

2017년 5월 9일 작성

총리 : 베르나르 카즈뇌브(Bernard CAZENEUVE)

기후에 관한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환경·에너지·해양부 장관
세골렌느 르와이얄(Ségolène ROYAL)

교육·고등교육·연구부 장관
나자 발로-벨카셈(Najat VALLAUD-BELKACEM)

해외영토부 장관
에리카 바레(Ericka BAREIGTS)

생물다양성 담당
차관 바르바라 폰필리(Barbara POMPILI)

부록

제 R. 412-33조에 대한 부록

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지식의 사용에 따르는 이익 공유 표준 계약서

본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 간에 체결된다.

한 쪽 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 지방정부에 관한 일반법률 제 L. 7142-19조가 정하는 공공기관 (해당 전통적 지식을 기아나의 하나 혹은 여러 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가 대표하는 지구(地區) (Uvea/Alo/Sigave) (해당 전통적 지식을 윌리스 푸투나 제도의 하나 혹은 여러 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사람은 차후 “환경에 관한 법률 제 D. 412-30조에 의거하여 공법인”이라고 지칭한다.

또 다른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XXX는 를 법적으로 대표하고 직위는 이며, 본사 주소는 와 같다.

위 사람은 차후 “사용자”라고 지칭한다.

이들 전체 혹은 각각을 “당사자들” 혹은 “당사자”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본 계약은 다음에 열거한 내용에 따라 체결된다.

1992년 5월 22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하고 1992년 6월 13일 프랑스에서 조인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두 가지 부록도 포함)에 따라,

생물다양성 협약 (한 가지 부록 포함)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 따르는 공정한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채택하고 2011년 9월 20일 프랑스에서 조인됨)에 따라, 환경에 관한 법률 제 L. 412-9조~제 L. 412-14조 및 제 R. 412-28조~제 R. 412-38조에 따라,

..... 측이 제시하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사용을 위한 요청에 따라,

전통지식 사용 요청의 대상자가 되는 지역공동체의 협의 진행을 정하는 환경에 관한 법률 제 L. 412-11조 제 6항 적용에 따라 년 일 일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제 1조 계약 대상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지역공동체가 합당하게 표명한 사전 동의내용을 문서로 공식화하기 위함이다 :

사용하고자 하는 전통적 지식 내용 :

사용 목적 :

본 계약서에서는 사전에 동의가 이루어진 해당 전통지식의 사용 조건과 전통지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대한 조건도 명시한다.

본 계약서의 등록 번호 :

제 2조 전통적 지식의 사용 조건

제 3조

전통적 지식 사용에 따른 이익공유의 조건

3.1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들은 아래 열거한 계획들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제 1조에서 명시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익공유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환경에 관한 법률 제 L. 412-4조 제 3항 a~f호가 명시하는 활동 범주에 속해야 한다.

- a)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지 내 또는 현지 외 생물다양성의 보존 혹은 개발
- b)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이는 지역공동체의 합당한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함)을 통한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 보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소중히 여겨야 할 다양한 전통적 관행이나 노하우 보존
- c) 지역 주민을 위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거나 유전자원 혹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가능케 하는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의 개발에 기여하는 활동 (이 모든 활동은 해당 유전자원의 보존에 기여하는 국가와의 연계 하에 이루어져야 함)
- d) 연구, 교육, 연수, 대중 및 전문가 대상 홍보, 노하우 및 기술 이전과 같은 활동을 위한 협력 혹은 기여

e) 주어진 지역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에 대한 유지, 보존, 관리, 공급 혹은 복원

f) 자금 지원

3.2 위에 언급한 계획들은 해당 지역공동체와의 협의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와 관련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3.3 전통적 지식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다음과 같은 주체에게 돌아간다.

- 아래와 같은 하나 혹은 여러 지역공동체 :

.....

- 환경에 관한 법률 제 D. 412-30조가 정하는 공법인(해당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관리작업 및 권리이행을 담당한다)

해당 이익은 별도 회계로 처리된다. 이익은 오직 해당 지역공동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의해서만 창출되어야 하며 지역공동체와의 협의 및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서가 최초에 정한 이익 수혜자가 사라진 경우에는 환경에 관한 법률 제 D. 412-30조가 정하는 공법인이 대신한다. (환경에 관한 법률 제 L. 412-14조 제 III항에 의거한 선택 조항)

제 4조

결과물 출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출판물에는 전통적 지식의 원산지와 제 1조에서 언급한 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제 5조

기간 및 계약 해지

본 계약은 환경에 관한 법률 제 R. 412-33조가 정하는 승인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은 사용자가 규정을 하나라도 위반했을 시 환경에 관한 법률 제 D. 412-30조가 정하는 공법인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독촉장을 수령통지 요청서를 포함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편물 발송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된다.

제 6조

원만한 해결 절차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용자와 환경에 관한 법률 제 D. 412-30조가 정하는 공법인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사용자는 의견 대립의 원인을 밝히는 항의서한을 작성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하다면 자신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명시한다. 환경에 관한 법률 제 D. 412-30조가 정하는 공법인은 항의서한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공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의사표현이 없으면 해당 항의내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7조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관할 재판소

본 계약은 프랑스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본 계약에 대한 해석, 이행 혹은 효력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지역 내 행정 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다.

계약 체결 장소 : 날짜 :
.....